

132

공 고 번호	연계기호	432.4	기안용지 (전화번호 465)		전결규정	조항
	제리기한	기안처			구획정리과	도시계획국장
고 행 일 자	시행일자	68.7.24	서명	유우부	결재	<i>[Signature]</i>
	부조연한	기안일자	68. 6. 24	경제일자		
보 조 기 판	구획정리과장	관지계장	모택중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확 법 인 무 7월 21일 <i>[Signature]</i> </div>		
현 조	계획계장	법계담당	법수관			
경 수 참 세	유 신 조	각 안 참 조	봉 제	정 서	파 대 장 정 리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검 인 1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과장 </div>
제 1 안	내부결재					
<p>1. 서울특별시 공고 제 214호 (67. 12. 26)로서 지정 공고된바 있는 엄곡동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관지 예정지 지정지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변경 지정하고자 합니다.</p>						
<p>2. 변경 사유</p> <p>가. 엄곡동 115-1 및 115-2는 관지 계획자료 조사시 시유지로 조사되어 일부 면적에 한하여 관지를 지정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 출원에 의하여 사유지임이 판명되어 고부 처리된 면적과 일부 사용 불가한 면적을 합하여 변경토지 하며,</p>						

88.124 10-1 2041

서울특별시

23

나. 188-1 및 253-1은 출입 통로의 조사 착오로 폐쇄되었음이
발견되어 농 토지등에 통로를 개설하여야 하며,

다. 116-28 및 120-1은 각각 기존 건물로서 소유자가 상위되어 각각
~~각종 건물로서 소유자가 상위되어 각각~~ 분할 지정하고자 하며,

라. 산 87-16은 지정 당시 누락되어 추가 지정코져 합니다.

제 2 안

서울특별시 **공고 제 13호**

관지 예정지 일부 변경 지정공고

1. 1967. 12. 26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 214호로서 지정한 서울특별시 도
시계획사업 엄희조지구취정리 지구내 일부 관지 예정지를 별첨 도서와 같이 변
경 지정 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2. 별첨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취정리과 및 서대문구청 오루
구 또는 서부조지구취정리 사업소에 비치 합니다.

1968. 2 2

서울특별시장

제 3 안

수신 수신처 참조

발신 시 장

제목 관지 예정지 변경통보

1. 서울특별시 공고 제 214 호 (67. 12. 26)로 지정통보함바 있는 연
희 토지구취정리 사업지구내 관지중 귀하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별첨 변경 지정
서와 같이 변경 지정 되었음을 통보 합니다.

2. 관지 예정지 변경 도서는 당시 도시계획국 구취정리과 및 서대문구 24

정 도목과 또는 서부호지구취정리 사업소에 비치 하였으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환지 예정지 변경 조서 1부.

수신처. 별첨 소유자 명부

제 4 안

수신 수신처 참조

발신 시 장

제목 환지 예정지 일부 변경 통보

현역호지구취정리사업지구내 환지 예정지중 일부에 대하여 별첨 공고문과 같이 변경 지정 되었기 통보하니 업무 수행에 착오 없도록 함것.

첨부. 1. 공고문 사본 1부.

2. 환지 예정지 변경 조서 1부.

3. 환지 예정지 변경 도면 1부.

수신처. 서대문 구청장. 서부호지구취정리사업소장

제 5 안

수신 공보실장

발신 국 장

제목 환지 예정지 일부 변경 지정

현역호지구취정리 사업지구내 환지 예정지 중 일부 지적에 대한 환지를 별첨 공고문과 같이 변경 지정 하였으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공고문 사본 1부.

제 6 안

수신 서무국장

발신 국 장

제목 환지 예정지 변경 도서 송부

현역호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흙지 예정지중 일부 호지에 대하여 별첨 도서후 값이 변경 지정 되었기 송부 합니다.

- 첨부. 1. 흙지 예정지 변경 조서 1부.
2. 흙지 예정지 변경 도면 1부.
3. 공고문 사본 1부. 끝.

보 고 서

현역로지구획정미 사업지구내 관지를 공고 제 214호 (67. 12. 26)로 지정한바 있으나 일부 관지중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변경 지정토록 보고 하나이다.

1. 서대문구 현의동 115- 1 및 115- 2는 관지 계획 자료 조사서에 당 사유지로 오기 되었었으며 또한 가옥의 필집 지대로서 본 토지만이 공지로 유지되어 오던중 현지 관지로 지정된것이므로 교부 처미케 되었은 것이다. 현 토지 소유자의 출원에 의거 근계 공부 재 조사 결과 사유지임이 판명되었으므로 동 토지 의 교부 법적과 일부 사용 불능법적에 대하여 관지를 변경지정함이 타당하며,

2. 서대문구 현의동 120- 1 및 116- 28은 동일 소유자이며 또한 기존 건물에존립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합병으로 현지 관지 하였은것이나 소유자 (근리자) 상위로 각자등의 자체 혁절은 난망한것이 소유자등의 출원과 인근 주민들로부터 내용을 인지한 결과 각각 분할 지정하여 근계한 액제 수익을 조장함이 가하고,

3. 서대문구 현의동 188- 1 및 253- 1은 일부 출입 통로의 폐쇄 (현재는 우회하여 타 대지상으로 통행함) 또는 공공 도로의 잔여 부지를 택지로 지정함을 각 소유자등의 출원으로 일부 통로 개설 및 중 관지 지정 토록 하며,

4. 업의동 산 87- 16은 지정 공고시에 누락된것이 발견 되었으므로
수가 지정되지 합니다.

1968. 6. .

구워정리과. 지방토목기원보 유 우 부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10-6

350

28

토지 소유자 명부

구분	구	분	성명
1	마포구 장천동	2 - 11	홍은명
2	서대문구 연희동	120	이창빈
3	"	" 120 - 1	강유순
4	"	" 188 - 1	안정학
5	"	" 253 - 1	이기정
6	성북구 성북동	13 - 8	유화정

10-7

환지 예정지 변경조서

동명	지번	면적	비고	기타	비고	기타	비고
연회동	115-1 전	64.7	170.90	95-	바 77	47.-	
"	115-2 "	150.7			바 77	110.20	
	계	214.1	170.90	95-		157.20	157.20
							(일부변경지정)
"	116-28 대	18.7	60	77	116	60.-	장수 48.40
"	120-1 "	219.-	120.-	78	163.-	163.-	—
	계	237.-	170.-	180.-			
							(각각분할지정)
"	189-1 전	51.-	3210	66.-	51	3210	71.- 장수 38.90
							(일부증환지 지정)
"	253-1 대	77.-	65.-	69.-	51	65.-	79.50 장수 14.90
							(일부증환지 지정)
"	산87-16 일	68.-					교부 2.20
		(1507)					45 46.20 44.-
							(추가지정)

환지 예정지 변경조서

총 산 토 지			원		
동 명	지 번	지 부	번 호	면 적	비
			간격면적	원격면적	원격면적
채	비	지	가 45	44-	사우지지점열 말소
	"		가 57	25-	20. 원부감당
	"		가 77	102.50	48. 위치변경
	"		가 77	119.10	111.40 원부감당
	"		가 78	78-	35-